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67회 정례회  
'18. 9. 7.(금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8년 08월 28일
- 회부일자 : 2018년 08월 31일

3. 제안이유

-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
-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공개대상(안 제2조) : 예산 절감 사례,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등
- 신고센터의 설치 등(안 제4조) : 예산·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,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, 예산 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·처리
- 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(안 제6조) : 예산절감, 수입증대 등과 관련된 제안자에게 성과금 지급 및 포상
-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(안 제7조~12조) : 감시단 구성 및 임기, 위촉 해제, 권리와 의무, 수당 규정 등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가. 제출배경

-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 공무원 및 도민 등으로부터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와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설치·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※ 행안부에서 “시·도 예산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협조 공문(2018. 2. 5.)”을 17개 광역시·도에 시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바로쓰기 시·도 감시단 구성 및 예산낭비신고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 본칙 12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각 주요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,
- **안 제2조**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과 관련한 공개대상을 규정하고 있음.
  -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토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 하였음.
- **안 제4조**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(이하 “신고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- 신고센터는 상위법령인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2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의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.
  - 충북의 신고센터는 2005년 3월 도 홈페이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2제1항 신설( ‘11. 9월) 이후

2012년 6월부터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포털시스템(www.epeople.go.kr) 내 예산낭비 온라인 통합 신고 시스템으로 운영해오고 있음.

#### □ 충청북도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개요

○ 개 설 : 2005. 3(도 홈페이지)

※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포털시스템 구축 통합운영( '12. 6월)

○ 근거법령 :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의2

**제54조의2(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·낭비에 대한 주민감시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,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**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** [신설 2011.9.6.]

○ 운영시기 : 연중

○ 전담반 구성 운영 : 2명(반장 1, 담당자1)

※ 예산낭비사례 접수(예산담당관실) → 검토 및 조치(관련부서)  
→ 결과 회신(관련부서→예산담당관실) → 1차조치 (신고처리 전담반)  
→ 조치결과 보고(도→행정자치부)

○ 조치결과

- 잘못된 지적 : 정확한 사실관계 도민에게 홍보
- 타당한 지적 : 사업의 중단, 보완 등 후속조치 강구  
(필요 시 관련부처 제도개선 건의)

○ 안 제5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내용 등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이와 같이 심사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사항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심사, 조사를 위한 방편으로 해석됨.
- 또한, 그 기능을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」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해 설치된 “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”에서 담당토록 한 것은 타당함.

## 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**제54조(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의 설치)**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를 둔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

**제4조(기능)**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
2.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
3.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
4.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
5.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
6.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○ **안 제6조**는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등과 관련된 제안을 통해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충청북도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하고,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격려금 지급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성과금 지급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의2제5호 및 「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」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- 격려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성과금 지급대상은 아니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(도지사)이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 이는 공무원 및 도민의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에 관한 관심과 참여율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.
- 다만, 충청북도 신고센터에서 2008년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 처리한 신고 건수는 총 33건이고, 이 중 실제 예산낭비 및 예산 절감에 해당하는 신고는 단 3건에 불과했음.

※ 충청북도 예산낭비 신고센터 추진실적

구 분	신고건수(비율)				비고
	합계	타당한 신고*	타당하지 않은신고	무관한 신고	
계	33	3	5	25	
2018년	5	0	0	5	'18. 8. 31기준
2017년	5	1	0	4	
2016년	3	0	0	3	
2015년	3	0	2	1	
2014년	3	1	1	1	
2013년	5	1	1	3	
2012년	4	0	1	3	
2011년	0	0	0	0	
2010년	0	0	0	0	
2009년	3	0	0	3	
2008년	2	0	0	2	
2007년 이전	0	0	0	0	

\* 신고의 내용이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신고

- 따라서, 향후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금 등 지급 외에도 도민의 예산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신고·제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의 추가적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○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(이하 “감시단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,

- 감시단은 「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 12월 “예산 바로쓰기 국민 감시단<sup>1)</sup>”을 설치하였고, 2018년 2월5일 17개 시·도에 공문을 발송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를 적극 권고하였음.

1) 행정안전부가 설치·운영하는 “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”은 2017년 12월 13일, 변호사·세무사·회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여하는 총 246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임.

- 본 조례안에서는 감시단을 「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이는 행안부 및 충청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중복·유사 위원회의 폐지 및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판단되며, 울산시 및 경기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이 감시단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**<충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본 조례안에 따른 감시단 기능·구성·임기 비교>**

	주민참여예산위원회	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
기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</li> <li>2.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국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의견 제출</li> <li>3.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</li> <li>4.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 활동</li> <li>5.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ol>
	60명 이내	60명 이내
구성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장, 군수가 추천한 사람</li> <li>2. 「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」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</li> <li>3. 분과위원회별 주관 실·국장이 추천하는 관계분야 전문가</li> <li>4.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</li> <li>5. 기타 지방예산 운영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li> </ol>	<p>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있는 자로서 분야별·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·위촉</p>
임기	2년, 한 차례만 연임	2년, 한차례만 연임

- 다만, 「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2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감시단은 「국민 제안 규정」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 발굴과 관련한 제안활동가(생활공감모니터단)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충청도 현재 145명의 제6기 생활공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는데, 이를 활용하지 않고 감시단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게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※ 전북의 경우 조례에 감시단원으로 생활공감모니터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(개정일 2018. 6. 29.)

**□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  
(행정안전부 훈령 제14호)**

제26조(구성과 임기)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감시단은 300명 이내로 구성하며,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.  
②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감시단은 「국민 제안 규정」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 발굴과 관련한 제안활동가(생활공감모니터단)를 활용할 수 있다.

- 또한, 감시단 운영에 있어, 감시단원들이 예산낭비 시정요구 및 예산절약 제안 등 활동 시, “예산낭비 신고센터”에 신고토록 하여 그동안 실적이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센터의 내실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.

#### 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<참고자료>

### 1. 타 시·도 조례 제정 현황 (15개 시·도) ※ 미 제정 시도(2) : 인천, 충북

연번	조례명	제/개정일
1	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	2016-01-07
2	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	2018-07-11
3	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	2018-07-02
4	대전광역시 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감시 조례	2018-08-10
5	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2018-08-15
6	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2018-07-12
7	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	2018-08-10
8	경기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	2018-07-17
9	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	2018-04-13
10	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	2018-07-10
11	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	2018-06-29
12	전라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	2018-08-16
13	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	2018-07-12
14	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	2018-06-28
15	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	2018-08-23

### 2. 충청도 내 시·군 조례 제정 현황 (3개 지역)

연번	조례명	제/개정일
1	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	2017-12-29
2	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	2016-11-04
3	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	2015-11-06